

大韓建築士協會 倫理委員會規程

1965年9月25日創立總會制定
1966年9月24日第1回定期總會一次改正

目的

本規程은 大韓建築士協會 倫理規約에 비추어 建築士의 威信과 權益을 保全하고 業務遂行에 있어서 建築士의 誠實性과 信義를 높이고 아울러 建築士의 不美한 行動과 犯法行爲를 未然에 防止하여 만일의 경우에는 公平正大히 自家肅正을 斷行함으로서 國家社會로부터 建築士의 權威와 信任을 維持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1章 組織

第1條 (1) 本倫理委員會(以下 本委員會과함)에는 7名의 委員을 둔다

第2條 (1) 委員은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第3條 (1) 本委員會에는 委員長 1名을 두되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第4條 (1) 倫理委員會의 決定은 在籍委員3分의 2의 贊成으로 議決된다

第5條 (1) 委員이 本委員會 審議對象의 事件에 關聯되었을 때에는 그 委員은 當該事件審議에 參與할 수 없다

第6條 (1) 本委員會委員으로서 徵戒處分을 받았을 때에는 그 徵戒의 輕重을 莫論하고 委員資格을 壓失한다

第7條 (1) 前條에 따라 委員中 缺員이 생길 경우에는 委員長의 提議에 따라 理事會가 이를 補選한다

第2章 審議의 發議 및 決議

第8條 (1) 審議의 發議는 다음 경우에 發生한다

- ㄱ. 委員의 發議가 있을 때
- ㄴ. 正會員 7名 以上的 連署 要請이 있을 때
- ㄷ. 理事會의 要求가 있을 때
- ㄹ. 支部幹事會의 議決을 거쳐 支部長의 請求가 있을 때
- ㅁ. 關係官廳의 通告가 있을 때

第9條 ① 委員長은 審議의 發議를 받았을 때는 5日以内에 委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10條 ① 委員長은 審議對象이 된 建築士를 委員會에 參席시켜 그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 正當한 理由 없이 不參할 때는 그 意見을 듣지 않을 수 있다

第11條 ① 徵戒에 對한 決議는 다음 각項의 行爲에 適用하되 그 決定은 勸告, 譴責, 資格停止 및 除名의 4種으로 한다

- ㄱ. 勸告 또는 譴責에 該當하는 行爲
 - 1. 委囑者에 對한 不誠實한 行爲
 - 2. 報酬額의 不當한 割引
 - 3. 다른 建築士에 對한 謹誘行爲
 - 4. 建築士間의 不美한 行爲 및 다른 技術者와의 不當한 論爭行爲
 - 5. 規約 第 4, 5, 11, 12의 各條에 該當하는 行爲
- ㄴ. 期限付 資格停止處分에 該當하는 行爲
 - 1. 個人의 利益을 爲하여 다른 建築士의 權益을 유린하였다고 認定되는 行爲
 - 2. 規約 第7.8.9條에 該當하는 行爲
 - 3. 특히 비열한 方法에 依한 다른 建築士와의 競爭行爲
 - 4. 3回以上의 譴責을 받았을 경우
 - 5. 建築士法令에 依하여 建築士資格 또는 事務所開設의 期限付停止處分을 받았을 때
 - 6. 正會員 會費를 1年以上 滯納하였을 때
- ㄷ. 除各處分에 該當하는 行爲
 - 1. 建築士로써 自己나 다른 建築士의 權益이니 名譽을 極히 損傷시켰다고 認定되는 行爲
 - 2. 社會의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또 그 制裁를 받았을 경우
 - 3. 5回以上 譴責을 받았을 경우
 - 4. 3回以上 資格停止處分을 받았을 경우

5. 建築士法令에 의하여 建築士의 免許取消 또는
事務所開設取消를 받았을 때
6. 3年以上 正會員 會費를 滯納하였을 때

第12條 ①委員會에서 決議를 하였을 때에는 5日以內
에 委員長은 會長에게 그 決議事項을 報告하여야 한
다

第13條 ①會長은 前條의 報告를 받았을 때 5日以內에
理事會를 召集하여 倫理委會 決議事項에 對한 受諾
與否를 議決한다

②理事會는 倫理委員長을 參席시켜 意見의 隅述을
받어야 한다

第14條 ①理事會는 倫理委員會의 決定事項의 受諾與

否만 決定하여 決定事項의 內容變更은 할 수 없다
②理事會가 受諾拒否할 때는 即刻 委員會에 再審을
要求하여야 한다

第15條 ①徵戒決定을 받은 建築士는 徵戒通告를 받은
후 5日以內에 直接 理事會에 對하여 1回에 限해 再
審請求를 할 수 있다

第16條 徵戒는 理事會에서 議決된 後 委員長 名義로
宣告함으로써 發効한다

附 則

第17條 本規程은 總會의 承認을 받은 날부터 發効한
다

大韓建築士協會 倫理規約

1965年10月23日 創立總會制定
1966年9月24日 第1回定期總會一次改正

第1條 建築士는 委囑者の 信任을 받는 代理人이며
自己에게 맡겨진 責任과 任務를 良心과 誠意로서 遵
行한다

第2條 建築士는 委囑者에 關하여 業務上의 秘密을 遵
守한다

第3條 建築士는 委囑의 對象이 되는 建築物이 純粹한
建築文化와 社會福祉에 合致되지 않는다고 認定되거나
委囑者の 要素로 보아 建築士를 自體의 権益을 損
傷시킬 우려가 있다고 認定될 때는 業務의 委囑을 拒
否한다

第4條 建築士는 委囑에 關한 報酬以外에는 어찌한
金品도 받지 않는다

第5條 建築士는 委囑者에게 事前에 報酬額制定의 原
則과 計算에 따르는 諸條件 또는 規約等을 啓蒙
熟知시켜야 할 것이며 報酬의 割引 其他 不當한 手
段으로 建築士와 競爭하지 아니하다

第6條 建築士는 專門家로서 委囑者와 都給業者 및 納
入業者間의 모든 問題를 公平하게 實際의으로 判定
한다

第7條 建築士는 다른 建築士와 委囑者間에 交涉이
相當히 進行된 것을 알면서 그 委囑者에게 業務委囑

의 交涉 또는 그의 要請에 應하지 아니한다

第8條 建築士는 이미 다른 建築士에게 委囑된 일의
實施 또는 完成의 付託을 委囑者로부터 받았을 경우
當該 建築士와 委囑者 사이의 關係가 解消되었음이
建築士相互間 또는 協會의 確認이 없이는 그 委囑
을 受取아니한다

第9條 懸賞設計에 依한 實施設計에 있어 最高의 賞
을 받은 以外의 建築士는 그 委囑을 拒否한다

第10條 다른 建築士 또는 建築技術者를 雇傭하고 있
는 建築士는 自己에게 委囑된 일에 對한 責任에 支
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被雇庸者の 技術向上을 可能
케 하는 便宜를 提供한다

第11條 建築士는 建築材料 또는 建築構造等의 廣告에
있어서 建築士의 各譽를 毀損시킬 證明書를 發付하
지 아니한다

第12條 建築士는 自己의 事業 및 業績 또는 다른 建
築士에 關하여 虛偽宣傳을 하지 아니한다.

第13條 本倫理規約를 實施하기 為하여 倫理委員會을
組織한다

第14條 建築士는 倫理委員會의 決定에 服從한다.